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0280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현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922,142원 및 그 중 11,838,810원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1. 3. 1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 8. 4. 접수 제795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와 2011. 5. 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D, 보증금액 100,000,000원(그 후 6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2. 5. 8.(그 후 2021. 4. 29.까지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소외 회사가 소외 E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피고 A, F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소외 회사는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21. 1. 15.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60,359,368원을 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부터는 연 10%이다.

(3)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341,910원이다.

(4) F의 변제로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11,838,810원이다.

(5)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48,520,558원을 회수하여 1,741,422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2020. 7. 28.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3,922,142원(= 11,838,810원 + 341,910원 + 1,741,422원) 및 그 중 11,838,810원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3. 1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를 연대보증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실제로 2021. 1. 15.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인정사실에 따르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주류도매업을 하는 소외 회사가 거래처인 피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류를 공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으로서 당시 소외 회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책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20. 7. 10.부터 이미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해 대금을 연체했고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등기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 후 이루어진 거래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이 사건 계약 후 소외 회사와의 거래 종료 당시에는 외상대금채무가 일부 감소한 점, 이 사건 계약 후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7회만 공급하였음) 불과 15일 만에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담보제공에 상응한 계속적 물품공급의 실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G도 소외 회사의 채무 연체로 인해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소외 회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로부터 계속 주류를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외상대금채무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외상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다거나 채무 변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계속 공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과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확정된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B 사이의 이 법원 2021가단5012998 사건 참조).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양주시 대 1256㎡
2. 경기도 양주시 동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122.4㎡
1층 5㎡
3. 경기도 양주시 동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122.4㎡
4. 경기도 양주시 도로 41㎡

